

수학계산학부 수학과 대학원 운영내규

제정 : 2020.09.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과 대학원 내규 및 시행세칙(이하 “대학원내규”)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학계산학부 수학과(이하 “학과”)의 학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대학원위원회)

- ① 대학원내규 「학과 대학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에 따라 학과 대학원위원회(이하 “학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과의 대학원 학사를 관장한다.
- ② 학과위원회는 학과 소속의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이하 “학과 교수”) 중에서 주임교수와 학과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주임교수로 정한다.
- ③ 학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학과위원회는 대학원 입시와 운영에 관련하여 다음과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서류 및 구술평가 심사위원 위촉, 합격사정 등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
 2. 학과 대학원 입시 및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전공 종합시험 합격자 판정 등 대학원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
- ⑤ 학과위원회는 매학기 입학전형이 시작될 때 위원장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또한 대학원 운영에 관련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또한, 학과위원회를 학과 회의와 병행하여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고, 필요시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 ⑥ 학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위원 중 회피·제척 대상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이 경우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2장 지도교수 배정 및 수강신청

제3조(지도교수)

- ① 지도교수는 학과 교수로서 학사지도교수와 논문지도교수를 통칭한다.
 1. 학사지도교수는 제20조의 학위논문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학생을 지도한다.
 2. 논문지도교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며 학사지도교수를 대체한다.
- ② 주임교수는 각 학위과정 신입생의 연구계획서를 참고하여 첫 학기 시작일 이전에 신입생의 학사 지도교수를 학과 교수 중에서 예비 위촉하여 학생에게 안내한다.
- ③ 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지도교수를 신청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위촉 신청서(별지서식1)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강신청 확인서(별지서식2)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한 경우 연구실 배정과 장학생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장 이수학점

제5조(이수학점)

- 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학칙 제15조에 따라 석사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0학점, 통합과정 54학점이다.
- ② 각 학위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학기당 이수학점)

- ① 학칙 제16조에 따라 학생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7조(필수이수과목)

-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은 다음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 대수학1(MAT6200)
2. 실해석학1(MAT6400)
3. 대수학2(MAT6250)와 실해석학2(MAT6450)중 1과목 선택
4. 수학년제와 세미나(MAT6055)

단, 박사과정 학생이 이전 학위기간 중 상기 과목을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은 필수 이수를 면제한다.

- ②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이후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연구지도1(MAT7999)을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은 연구지도2(MAT9999)를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타전공 및 타대학원 학점인정)

- ① 학생이 학과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할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별지서식3)을 받아야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② 수학기산학부 계산과학공학과 개설 과목은 학과 개설과목으로 인정한다.
- ③ 우리 대학원과 협정에 의해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인정은 학칙 제17조 및 대학원내규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9조(이수인정 평점)

- ① 학칙 제21조에 따라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총 평량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대학원 등록 및 수료

제10조(대학원 등록)

- ① 학칙 제8조와 대학원내규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대한 내규」에 따라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1. 정규등록: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처음 4학기까지, 통합과정은 처음 6학기까지의 등록
2. 연구등록: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

제11조(연구등록 납입금)

- ① 대학원내규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대한 내규」에 따라 연구등록자의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연구등록자라 할지라도 연구지도 이외의 과목을 수강신청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료 요건, 수료자 등록 및 휴학)

-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4학기 이상, 통합과정에서 6학기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제5조(이수학점) 및 제9조(이수학점 평점)의 요건을 충족하며 제20조의 자격시험을 합격한 경우 각 학위과정에서 수료 요건이 충족된다.
- ② 대학원내규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대한 내규」에 따라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대학원내규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대한 내규」에 따라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자의 휴학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승인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장 전공 종합시험

제13조(전공 종합시험)

- ① 전공 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은 학부 기초시험, 대학원 기초시험, 연구발표시험을 통칭하며 각 학위과정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석사학위과정: 학부 기초시험, 대학원 기초시험
 2. 박사학위과정: 학부 기초시험, 대학원 기초시험, 연구발표시험
- ②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학위과정 규정을 따르며, 통합과정을 중단한 경우는 석사학위과정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종합시험 응시 및 합격자격)

- ① 학부 기초시험의 응시는 각 학위과정 2학기까지로 제한한다.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입학일 이전이라도 학부 기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 대학원 기초시험의 합격은 각 학위과정 4학기까지로 제한한다.
- ③ 연구발표시험의 응시는 박사과정 8학기, 통합과정 10학기까지로 제한하며, 응시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 ④ 휴학 및 제적생은 전공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이 불가하다.

제15조(종합시험 합격의 확정)

- ① 매학기 학과위원회에서 종합시험 응시자의 합격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종합시험의 합격은 대학원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학부 기초시험)

- ① 학부 기초시험의 출제범위는 우리 대학교 학부 미분적분학(MAT1001, MAT1002)과 선형대수(MAT2102, MAT3120) 과목의 전 범위로 정한다.
- ② 학부 기초시험은 매년 2월과 8월에 1회씩 실시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최소 시험일 2주전에 공지한다. 응시자는 원서(별지서식4)를 반드시 접수기간(시험 실시 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부 기초시험은 학과위원회에서 추천한 학과 교수가 출제하며, 응시자가 미분적분학과 선형대수 과목에서 절대평가로 각각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 ④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한 학생이 이전 학위과정 기간 중에 학부 기초시험에 합격하였으면 원서(별지서식4) 제출로 학부 기초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⑤ 학부 기초시험의 결과는 학과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응시생에게 개별 통보한다.
- ⑥ 학부 기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과위원회가 정한 전형료(실비상당액)를 원서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최초 응시자는 전형료를 면제한다.

제17조(대학원 기초시험)

- ① 대학원 기초시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대수학(MAT6200, MAT6250)중 1과목과 실해석학(MAT6400, MAT6450)중 1과목을 3.0(B0)이상의 성적으로 이수
 2. 박사학위과정: 대수학(MAT6200, MAT6250)중 1과목과 실해석학(MAT6400, MAT6450)중 1과목을 3.7(A-)이상의 성적으로 이수
- ②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한 학생이 제1항의 박사학위과정 기준을 만족하여 대학원 기초시험을 합격한 경우, 박사학위과정 대학원 기초시험은 면제한다.
- ③ 대학원 기초시험 과목은 학과위원회에서 추천한 학과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대학원 기초시험의 합격 조건을 충족한 학기 성적제출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과사무실에 확인서(별지서식5)를 제출하여야 해당학기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8조(연구발표시험)

- ① 연구발표시험은 박사학위논문의 연구계획 및 내용을 발표하는 구술시험으로 학부 및 대학원 기초시험에 모두 합격한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이 응시할 수 있다.
 1. 박사학위과정: 8학기가 지나지 않은 학생이 응시할 수 있다.
 2. 통합과정: 10학기가 지나지 않은 학생이 응시할 수 있다.
- ② 연구발표시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학과 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발표시험 일정을 확정하여 신청서(별지서식6)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발표시험 평가표(별지서식7)를 심사위원에게 시험일 이전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③ 통합과정 학생은 연구발표시험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제30조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 ④ 휴학 및 제적생은 연구발표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인정이 불가하다.
- ⑤ 연구발표시험의 결과는 학과위원회에서 심사평가표를 확인하여 합격을 결정한다.
- ⑥ 연구발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과위원회가 정한 전형료(실비상당액)를 원서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최초 응시자는 전형료를 면제한다.

제6장 외국어시험

제19조(외국어시험 졸업요건)

- ① 외국어시험은 영어시험을 의미한다.
- ② 학생이 아래 공인 영어시험 최소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성적표 원본을 신청서(별지서식19)에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해당 학기 성적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면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TOEFL: 석사학위과정 73점, 박사학위과정 78점
 2. TOEIC: 석사학위과정 630점, 박사학위과정 680점
 3. TEPS: 석사학위과정 268점, 박사학위과정 297점
- ③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학위과정 규정을 따르며, 통합과정을 중단한 경우는 석사학위과정의 규정을 따른다.
- ④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한 학생이 제2항의 박사학위과정 최소기준 이상으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경우, 확인서(별지서식19) 제출로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⑤ 외국인 학생도 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어권 외국인이나 중·고등학교 전 과정, 학부, 석사 또는 박사 전 과정을 영어권 국가에서 마친 경우, 주임 교수의 승인(별지서식19)으로 외국어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⑥ 각 학위과정 중에 우리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강좌”를 수료한 경우 주임교수 승인(별지서식19)으로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⑦ 매학기 학과위원회에서 외국어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한다.

제7장 학위논문

제20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 ① 각 학위 과정에서 전공 종합시험과 외국어 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21조(연구계획서 제출)

- ①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직전학기까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5조(이수학점), 제7조(필수이수과목), 제9조(이수인정 평점)를 충족한 자는 학위 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도 이수학점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 ② 휴학 및 제적생은 연구계획서 제출이 불가하다.

제2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 ① 대학원내규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라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만족한 학생은 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나)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별지서식8) 및 학위논문작성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지서식9)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 연구 지도를 받은 자
 - (다)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자.
 2. 박사학위과정
 - (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나)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별지서식8) 및 학위논문작성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지서식9)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2학기 이상 연구 지도를 받은 자
(다)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자

3. 통합과정

(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나)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별지서식8) 및 학위논문작성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별지서식9)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2학기 이상 연구 지도를 받은 자

(다) 정규등록 6학기를 필한 자

(라) 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자

제23조(학위논문)

① 석사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문 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국문, 영문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여 한다. 단, 영문 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의 요청과 대학원이 최종 승인한 경우 국문, 영문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학위논문 심사위원)

① 대학원내규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라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하며,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승인서(별지서식16)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학위논문의 예비심사)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석사학위 논문 예비심사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가능하며 대학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는 박사학위 수여 6개월 이전까지 받아야 한다.

② 학위논문 예비심사는 학생의 학위논문에 대한 공개 발표로 이루어지며, 발표심사 일정 등은 사전에 학위논문 심사위원 및 학과차원에서 공지되어야 한다.

③ 예비심사를 받는 학생은 학위논문 예비심사 확인서(별지서식17)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학위논문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별지서식18)를 심사위원에게 심사일 이전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26조(학위논문의 심사)

① 예비심사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을 충실히 수정 보완한 학생으로서 제28조(학술활동 졸업요건)를 충족한 학생은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준비된 평가서(대학원 양식)를 심사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최소 1학기 경과 후 재심사 받을 수 있다.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⑤ 석사과정의 경우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박사과정의 경우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 통합과정은

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7조(학위논문 공표)

①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장 학술활동 졸업요건

제28조(학술활동 졸업요건)

- ① 석사학위 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연구내용을 학술대회에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권장한다.
- ② 박사학위 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연구내용을 학술대회에 1회 이상 발표하고 국제저명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확정)하여야 한다. 국제저명학술지의 기준은 SCI 등재를 원칙으로 하며 학위논문 심사위원이 판정한다.
- ③ 박사학위논문의 주제가 정보과학분야일 때 제2항의 요건은 우수학술대회 1회 이상 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정보과학분야 우수학술대회는 한국정보과학회 우수학술대회 목록을 기준으로 학위논문 심사위원이 판정한다.
- ④ 학술활동 졸업요건 확인(별지서식10)은 학위논문 심사위원이 하고, 주임교수가 최종 승인한다.

제9장 학위과정 변경

제29조(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학위변경)

-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 또는 사전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자격 요건은 대학원내규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 ② 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은 학칙 제8조(등록 및 등록금)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학위과정 제반 사항은 통합과정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석사학위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된 학생의 재학 연한은 석사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한다.
- ④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승인한 학점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제30조(통합과정 중단)

- ① 통합과정 학생이 통합과정을 중단하고 석사과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사전승인 하에 대학원장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자격 요건은 대학원내규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 ② 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의 학위과정 제반 사항은 석사학위과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운영세칙

제31조(연구실 근무 원칙)

- ① 연구실 좌석이 배정된 학생은 주 40시간 이상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매달 월간근무시간표(별지서식14)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달 10일까

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포스터 발표)

- ① 각 학위과정 3학기 이상의 학생은 학과 포스터 발표회에 매년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 ② 학과 포스터 발표회는 매학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및 방법은 학과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33조(박사학위 연구과정 연구실적 보고서)

- ① 박사학위과정 4학기, 통합과정 6학기를 초과한 연구등록 학생은 매 홀수 학기 성적제출마감일까지 지난 1년간의 연구내용 및 결과를 연구실적 보고서(별지서식13)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실적 보고서는 학과위원회에서 A(우수), B(보통), C(미흡)의 3단계로 평가하여, 연구실 배정과 장학생 추천 등에 참고한다.

제34조(조교활동)

- ① 조교활동은 재학 조교(TA)로서 교육과 관련하여 학부 및 대학원 과목에 대한 수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재학 조교는 학과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임교수가 선정하며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석사학위과정 4학기 이내, 박사학위과정 8학기 이내, 통합과정 12학기 이내의 재학생
 - 2. 전문연구요원이 아닌 학생
 - 3. 학부 기초시험을 합격한 학생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③ 학과위원회가 재학 조교로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교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조교활동을 매우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연구실 배정과 장학생 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5조(연구실 배정)

- ① 연구실 내 좌석은 매학기 배정하며,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 학생에 한하여 다음 순위로 배정한다.
 - 1. 각 학위과정 신입생
 - 2. 제34조의 조교활동을 수행중인 학생
 - 3. 각 학위과정에서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4.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
-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좌석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제31조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 제32조의 포스터 발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 3. 제33조 2항의 연구실적 보고서 평가에서 C(미흡)를 받은 경우
 - 4. 제34조 3항에 해당하는 조교활동을 거부하거나 매우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 ③ 미등록 학생(휴학생 포함)의 연구실 좌석배정은 학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11장 기타

제36조(4단계 BK21사업 연구장학생 추천)

- ① 매학기 초에 학과위원회는 교육부 훈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학기 BK21사업 연구장학생을

선발하여 사업단장에게 추천한다.

② 학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순서로 연구장학생을 선발한다. 각 학위과정 4학기 이상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아래의 우수연구실적은 제28조(학술활동 졸업요건) 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실적을 말한다.

1. 각 학위과정 1학기 학생
2. 각 학위과정 2학기 학생 중 학부 기초시험에 합격한 학생
3. 각 학위과정 3학기 학생 중 학부 및 대학원 기초시험에 합격한 학생
4. 각 학위과정 4학기 학생 중 학부 및 대학원 기초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석사과정 학생은 3학기까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5. 박사 및 통합과정 6학기 이내 학생 중 학부 및 대학원 기초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우선순위: 우수연구실적>연구발표시험 합격>정규등록>재학학기)
6. 박사과정 8학기, 통합과정 10학기 이내 학생 중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
(가) 박사과정: 6학기까지 자격시험에 합격 (우선순위: 우수연구실적>재학학기)
(나) 통합과정: 8학기까지 종합시험에 합격 (우선순위: 우수연구실적>자격시험 합격>재학학기)
7. 통합과정 12학기 이내의 학생 중 10학기까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생 (우선순위: 우수연구실적>재학학기)

③ 제2항의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장학생 추천에서 제외한다.

1. 제31조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제32조의 포스터 발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제33조 2항의 연구실적 보고서 평가에서 C(미흡)를 받은 경우
4. 제34조 3항에 해당하는 조교활동을 거부하거나 매우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④ 4단계 BK21사업 연구장학생의 선정은 BK21사업단장이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20학년도 제1학기 이전에 수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기존 수학과와 자격시험 규정을 적용하되, 2018학년도 제1학기 이후에 입학한 학생은 이 내규의 자격시험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제16조 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과 2021년 5월에 학부 기초시험을 1회씩 추가 실시하되, 응시자격은 입학한지 2학기가 지나지 않은 학생으로 제한한다.